

조직기증지원기관 지정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15일
기관 명칭			
소 재 지			
대표자 성명		전화번호	

「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보건복지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. 지정받으려는 자가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인 경우: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나. 지정받으려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: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및 정관 2. 「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에 따른 시설·장비 및 인력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지정받으려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